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아량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1500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2일
발 의 자 : 송아량 의원(1명)
찬 성 자 : 정진철, 김태호, 김상훈,
전석기, 김평남, 김제리,
김기덕, 김광수, 장상기 의원(9명)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영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조례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따라서 조례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였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주요내용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관련 규정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 위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